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

의안 번호	343
----------	-----

2022년 12월 19일  
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제출

나. 제안일자 : 2022년 10월 17일

다. 회부일자 : 2022년 10월 21일

라. 상정일자

- 제315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2022년 12월 19일 상정 ·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교통실장 백호)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 운영」 사무는 서울특별시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교육, 복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과 시민(승객)에 대한 서비스 증진을 기여하고자 사단법인 서울특별시교통회관에 위탁중인 업무로서,
- 위탁기관이 2023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전문성 및 운영능력이 우수한 기관과 민간위탁(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의3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위탁시설 개요
  - 수탁기관: (사)서울특별시 교통회관(교통연수원)
  - 위탁기간: '20.03.01.~'23.02.28.
  - 소재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1길 38-10
  - 규모: 대지  $1,650.1 m^2$ , 건물  $5,222.67 m^2$ (지하1층, 지상5층)
  - 주요시설: 강당(소규모/대규모), 스포츠실, 헬스장, 사우나실 등
  - 운영인력: 16명(정규직 12명, 계약직 4명)
- 민간위탁(재위탁) 내용
  -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3년('23.1월 ~ '26.2월)
  - 위탁금액 : 1,491백만원
  - 위탁유형 : 시설형 위탁

- 위탁방법 : 재위탁(공개모집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한 선정)
- 위탁범위
  - 교육사업(운수종사자 교육, 강사선정 및 관리, 교재편찬 및 발간 등)
  - 복지·문화사업(운수종사자 복지쉼터, 헬스장, 스포츠, 대관 등)
  - 기타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한 사업의 수행
- 위탁사무:
  - 운수종사자의 교육
  - 운수종사자 등의 교양·취미활동 지원 및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
  - 운수종사자 등의 건강·휴식 및 생활편의를 위한 시설 등 운영 및 관리
  - 시민에 대한 교통문화 계도·창달 사업
  - “교육원”의 시설물·장비 등 유지관리 및 운영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추진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제3항
-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 4조(연수기관의 지정 등)
-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제4항(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및 제12조(재계약)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조직담당관-10999호, '21.10.12.)

## ○ 민간위탁(재위탁) 필요성

- 동 사업은 외부기관이 실시한 종합성과평가('19.6월)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등 민간위탁의 효과성이 입증되었음
- 택시운수종사자 교육·복지·문화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 경험을 있는 기관(단체)과 재위탁 추진하여 안정적인 업무 승계 도모를 위함

### 3. 참고사항(관련법령)

####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③ 시 ·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연수기관의 지정 등)

제4조(연수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지정하는 연수기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② 운수종사자의 교육은 연수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운수종사자 교육을 연수기관에 위탁 또는 의뢰하는 운수종사자의 교육 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운송사업자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운송사업자를 대표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위탁하게 할 수 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 시장

④ 시장은 연수기관의 시설, 인력 등을 감안하여 연수기관의 교육인원을 배정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운영의 위탁)

제10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의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통 또는 문화분야의 비영리법인 등에 교육원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수탁자로 참여할 경우 각 분야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과 권한 행사는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연장이 가능하며 수탁자가 협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만료 60일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여부를 수탁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은 1회에 한한다.  
⑤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나. 예산조치: '23년 예산 반영

다. 기타사항: 해당 없음

##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 장훈)

### 가. 개요

- 동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서울특별시 교통회관의 위탁기간이 2023년 2월 만료예정임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sup>1)</sup>에  
따라 위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전문성 및 운영능력이 우수한 기관과  
민간위탁(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  
는 것임
  
- 교통문화교육원은 서울시가 관련 법<sup>2)</sup>에 따라 운수종사자 교육과 시민  
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자 2000년 설치한 이후 2001년부  
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오고 있음

- 
-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 · 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 등에서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참고: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운영현황

- 위치: 서울시 관악구 남현1길 38-10(남현동 1063-6번지)
- 규모: 대지 1,650.1m<sup>2</sup>, 건물 5,222.67m<sup>2</sup>, 지상5층, 지하1층
- 시설내용: 강당, 강의실, 사우나실, 헬스클럽, 식당, 어학실 등
- 위탁기간: 2021.03.01.~2023.02.28.
- 위탁현황
  - '01. 7. 19. ~ '04. 8. 31.(3년) : 최초위탁(수탁법인 : (재)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 '04. 9. 1. ~ '07. 8. 31.(3년) : 재위탁(수탁법인 : (사)전택노련복지협회컨소시엄)
  - '07. 9. 1. ~ '10. 8. 31.(3년), '10. 9. 1. ~ '13. 11. 30.(3개월 연장) : 재계약(수탁법인 : (사)전택노력복지협회컨소시엄)
  - '13. 12. 1. ~ '16. 11. 30.(3년), '16. 12. 1. ~ '17. 5. 31.(6개월 연장) : 재위탁(수탁법인 : (사)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복지협회)
  - '17. 6. 1. ~ '20. 2. 29.(3년) : 재위탁(수탁법인 : (사)서울특별시교통회관)
  - '20. 3. 1. ~ '23. 2. 28.(3년) : 재계약(수탁법인 : (사)서울특별시교통회관)

## 나. 검토의견

### ■ 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사전절차 이행 여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라 함) 제4조<sup>3)</sup>에 따르면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사무 등을 민간위탁 할 수 있음

또한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sup>4)</sup> 및 제10조<sup>5)</sup>에서는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기능 수행 및 운수종사자 교양·취미활동 지원 등을 위해 교통 또는 문화 분야의 비영리법인 등에 교육원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운수종사자 교육 및 운수종사자 등에 대한 교양 프로그램, 건강·휴식 및 편의시설 등을 관리하는 교통문화교육원의 운영업무는 민간위탁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3)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4)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설치 및 기능)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교육원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1063번지 6호로 하며,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연수기관 기능 수행
2. 운수종사자 등의 교양·취미활동 지원 및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
3. 운수종사자 등의 건강·휴식 및 생활편의를 위한 시설 등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의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통 또는 문화분야의 비영리법인 등에 교육원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연장이 가능하며 수탁자가 협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만료 60일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여부를 수탁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은 1회에 한한다.

- 민간위탁 조례 제2조<sup>6)</sup>에 따르면 재위탁은 민간위탁 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에서는 시의회 동의 이전에 ‘민간위탁 운영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사무적정성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동 규정에 따라 개최된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에서 “교육목적의 연수시설 본연의 기능보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체육 시설로서 더 많이 이용되고 있어 시설 운영계획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심의보류<sup>7)</sup> 되었으나 이후 재심의를 통해 적정의견을 받음에 따라 사전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관리지침”에서는 재위탁시<sup>8)</sup> 수탁자를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는 공모방식과 특정 민간단체 등을 수탁자로 지정하는 수의 방식이 있으나 서울시는 공개모집을 통해 교통문화교육원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sup>9)</sup>임

---

6)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2022년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조직담당관-24458, '22.7.26.)

-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목적의 연수시설 본연의 기능보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체육 시설로서 더 많이 이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시설 운영계획에 대해 보완 후 재심의
- 사업비를 민간위탁금과 보조금으로 분할 산정하였으나, 민간위탁 교육사무와 일원화하여 민간위탁 금으로 재산정 필요

8) 재위탁 추진절차-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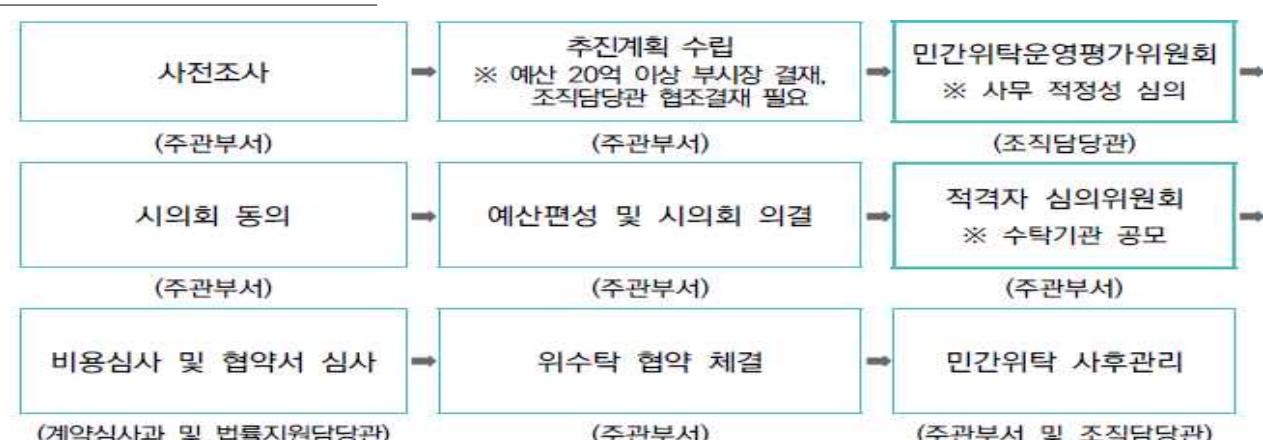
- 재위탁 공모절차

## ■ 민간위탁(재위탁) 적정성 여부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택시운수종사자의 교육 및 복지증진과 시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증진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 운영을 민간위탁 방식을 통해 운영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하였음

또한 택시운수종사자 교육·복지·문화사업에 전문성과 업무 경험의 있는 기관에 민간위탁(재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안정적인 업무 승계 도모 차원에서 적정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전문 수탁기관의 풍부한 시설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운영 및 택시운수종사자 교육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또한 효율적인 측면에서 인정됨

- 다만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지적받은 바와 같이 교육목적 외 시설 운영이 많은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재심의로 인해 새로운 위탁기관 선정이 미뤄지는 등의 문제로 업무 공백의 문제가 생겨 운수종사자 및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될 것이며 향후에 동일한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재위탁 수의절차: 재위탁 공모절차에서 수탁자 선정을 위한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절차가 생략됨  
9)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택시정책과-31376, '22.6.23.)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43
------------	-----

제출년월일 : 2022년 10월 17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 운영」 사무는 서울특별시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교육, 복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여 택시운수 종사자의 복지증진과 시민(승객)에 대한 서비스 증진을 기여하고자 사단법인 서울특별시교통회관에 위탁중인 업무로서,
- 나. 위탁기간이 2023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전문성 및 운영능력이 우수한 기관과 민간위탁(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민간위탁 개요

- 위탁기간 : 2023. 3. 1. ~ 2026. 2. 28.(3년)
- 수탁기관 :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 선정예정
- 위탁금액 : 1,491,849천원(민간위탁금, 2023년 예산편성안)
- 선정방법 : 재위탁
- 위탁업무

- 운수종사자의 교육
    - ▶ 신규교육(16시간), 보수교육(4시간), 법령위반자교육(8시간)
  - 운수종사자 등의 교양·취미활동 지원 및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
    - ▶ 사우나·헬스클럽 운영, 에어로빅·댄스스포츠·요가·탁구교실 운영
  - 운수종사자 등의 건강·휴식 및 생활편의를 위한 시설 등 운영 및 관리
    - ▶ 운수종사자 복지쉼터, 사무실 임대·대관
  - 시민에 대한 교통문화 계도·창달 사업
  - “교육원”의 시설물·장비 등 유지관리 및 운영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시설현황
- 위 치 : 서울시 관악구 남현1길 38-10(남현동 1063-6번지)
  - 면 적 : 대지 1,650.1  $m^2$ , 건물 5,222.67  $m^2$ , 지상5층, 지하1층

##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현황

- 추진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제3항
  - 서울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조직담당관-10999호, '21. 10. 12.)
- 추진현황
- '01. 7. 19. ~ '04. 8. 31.(3년) : 최초위탁(수탁법인 : (재)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 '04. 9. 1. ~ '07. 8. 31.(3년) : 재위탁(수탁법인 : (사)전택노련복지협회컨소시엄)
  - '07. 9. 1. ~ '10. 8. 31.(3년), '10. 9. 1. ~ '13. 11. 30.(3개월 연장) : 재계약  
(수탁법인 : (사)전택노력복지협회컨소시엄)
  - '13. 12. 1. ~ '16. 11. 30.(3년), '16. 12. 1. ~ '17. 5. 31.(6개월 연장) : 재위탁

(수탁법인 : (사)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복지협회)

- '17. 6. 1. ~ '20. 2. 29.(3년) : 재위탁(수탁법인 : (사)서울특별시교통회관)
- '20. 3. 1. ~ '23. 2. 28.(3년) : 재계약(수탁법인 : (사)서울특별시교통회관)

## 다. 재위탁 필요성

- 택시운수종사자의 교육·복지·문화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 경험이 있는 기관(단체)과 재위탁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업무 승계 도모
- 수탁 민간기관(단체)의 풍부한 시설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함
- 전문위탁서비스 활용을 통해 택시운수종사자 교육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어 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음
- 시민을 위한 복지 및 문화사업도 병행하여 운수종사자 가족과 지역주민에게 생활편의시설, 휴식공간 등 공공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 운영사무는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의견을 수합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업무와 높은 수준의 고객 서비스를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택시운수종사자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는 업무로써 관련 분야의 사업 연속성이 요구됨

###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

- 평가일시 : '22. 6월('22년 조직담당관 제2차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 평가기관 : 한국산업관계연구원
- 평가점수 : 75.05점(총 24개 등급(S~D0) 중 21개 “A0” 이상 획득)
- 평가항목 : 예산집행 효율화, 사업 활성화 개선, 사업성과, 만족도 평가 등
- 평가결과 :
  - 우수사항 : 자체적인 예산절감 노력으로 2020년 대비 2021년 공공요금을 50.4% 절감하였으며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하여 코로나-19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개인택시 신규교육 대상자에게 교육 횟수를 확대하였고, 시대 변화에 따른 교과목을 신설하고 교육교재를 업종별로 분리 발간하여 교재의 품질을 제고 하고자 노력함
  - 개선사항 : 분기별 예산 집행률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2/4분기에 집행률이 저조한 경향이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사업성과를 확대하기 위하여 홍보 방식을 다양화하며 온라인과 SNS 채널별로 이용객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분석하여 사업관련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코로나-19이후에는 모든 사업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연수기관의 지정 등)
  - ② 운수종사자의 교육은 연수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운영의 위탁)
  - ① 시장은 제4조의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교통 또는 문화분야의 비영리법인 등에 교육원을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나. 예산조치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조직담당관-10999호, '21. 10. 12.)에 의거,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보류('22. 7. 21.) 및 위탁기간 만료('23. 2. 28.)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예외적으로 동의안과 예산안을 동시 상정

#### 다. 기타

-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도시교통실태시정책과-31376, '22. 6. 23.)
-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22. 7. 21.) : 심의보류
- 제7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22. 10. 6.) : 적정

※ 작성자 : 택시정책과 장애인콜택시팀 이현승 (☎2133-2387)